

창업동아리 활동규정

제정 1999.01.15.

개정 2018.11.08.

제1조(명칭) 본 명칭은 창업동아리(이하 “동아리” 라 칭한다)

제2조(의의) 창업분위기 조성과 대학에서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 및 준비활동, 창업에 관한 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예비활동과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

제3조(목적) ①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 및 준비 활동

② 다양한 기술개발로 인한 창업 유도

③ 기술과 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생활정보를 공유

제4조(조직) 동아리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① 동아리의 조직은 그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5명이 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2. 활동계획서(소정양식)

3. 회원명부(소정양식)

4. 서약서(소정양식)

5. 회칙

6.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소정양식)

7. 동아리 소개서(소정양식)

8. 전년도 활동 실적서(소정양식)

③ 동아리를 조직, 등록할 시에는 반드시 1인 이상 본 대학의 교수중에서 지도교수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④ 동아리의 장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호소한 자로 성적이 평균평점 B⁰(3.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건전한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회비 또는 학교에서 필요시 일부의 경비를 지도교수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아리의 회칙 및 기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동아리의 정보교환 및 창의적인 개발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타대학과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활동)

- 1. 각 동아리의 장은 행사 5일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하여는 사전에 지도교수에게 보고 협의 하여야 한다.
- 3. 각 동아리 활동은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벤처로드쇼 등 경시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활동금지) 총장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동아리의 구성과 활동은 일체 금한다.

제7조(권리)

- ① 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서 동아리를 임의 소집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활동이 미온적이거나, 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락치 않을 때에는 임원단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활동시 활동의 목적이 학생신분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는 활동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집회도중이라 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④ 회원중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활동에 해를 끼치는 학생에 대해서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지도교수는 동아리 회원중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 대상에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의무)

- ① 지도교수는 회원의 활동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리 지도교수를 선정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는 회원이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올바른 집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격려 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모든 계획 및 집행여부를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9조(포상)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지도위원에 대하여 총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①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 ②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 ③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공간배정) 동아리방은 제4조 3항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공간을 배정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동아리방의 사용시간은 학교의 시설물 관리지침에 따르며 통상 08:00 ~ 22:00시로 한다. 단, 행사기간 중에는 학생지원팀에 사용 목적을 알린 후 허가를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 ① 실내 및 그 주변은 항상 청결, 정리 정돈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험한 물건이나 불법선전물 등의 보관, 부착을 금지한다.
- ③ 실내에서 고성방가, 불건전한 오락이나 풍기문란 행위를 금지한다.
- ④ 학교, 교수 또는 시설물 관리자의 점검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⑤ 동아리 방에서는 취침행위, 취사행위, 전열기구 등의 사용을 금한다.

제13조(폐쇄) 위 각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동아리방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서식) 동아리활동에 관한 각종서식은 일반동아리와 동일하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